의 안 번 호	제547호
의 결	
연 월 일	(제 회)

#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

발 의 자	박경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1일

###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(박경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7 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박경숙, 김꽃임, 김국기, 이의영,

이양섭, 이종갑, 임병운

#### 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O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O 화훼산업 관련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O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O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(안 제6조)
- O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(안 제7조)
-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(안 제8조)
- O 화훼 소비촉진 및 생화 사용 촉진(안 제9조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 : 붙임 (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)

O 조례안예고 : 2024. 4.

O 협 의 : 농정국 스마트농산과

O 비용추계: 붙임

####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 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화훼산 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
  - 2.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,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  - 3.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
- 5.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
  - 2.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
  - 3.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
  - 4.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
  - 5.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  - 6.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)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 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·개선,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훈련)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,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

-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②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 한다.
- 제9조(소비 및 사용 촉진)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
  - 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
  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제10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화훼(花卉)" 란 관상용,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화훼산업"이란 화훼의 품종육성, 재배, 가공, 유통,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,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3. "화훼문화" 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·발전되어온 유형·무형의 생활양 식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
  - 2.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,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

- 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 되고 화훼 관련 생산·유통·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 지역(이하 "진흥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·개선,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
  - 3.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  -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, 신청·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생산·유통체계 개선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, 생산자단체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3조(교육훈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,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4 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·홍보와 위반사항 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- O 충청북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
- O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O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

#### 3. 관련조문 (안 제6조)

O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(안 제6조)

#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O 재정수반요인 :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소요예산
- O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40억원(국비 20, 도비 6, 시군비 14)
-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군비 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#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(043-220-3610)

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백만원)

				(단기	: 백만원)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계
계	400		1,600	2,000	4,000
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	계	400	4800	2,000	4,000
	국비	200	800	1,000	
	도비	60	240	300	
	시군비	140	560	700	
	기타				
재원 조달	400		1,600	2,000	4,000
국 비	200		800	1,000	2000
도 비	60		240	300	600
시군비	140		560	700	1,4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